이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

소관부서 : 수도과

제정 1999 · 4 · 8 조례 제 280호 전부개정 2020 · 5 · 8 조례 제1601호 (제명개정) 일부개정 2024 · 7 · 1 조례 제2117호 (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수돗물의 평가를 위하여 「수도법」제30조에 따라 이천시 수 돗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,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기능) 이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수돗물 수질평가와 관련 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수돗물의 정기검사 실시 및 결과공표
 - 2.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
 - 3.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
 - 4. 그 밖에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이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.
 -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, 당연직 위원은 환경수자원국장 및 수도과장으로 한다. 〈개정 2024·7·1〉
 -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다만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21조제2항을 따른다.
 - 1. 수돗물에 대한 수질전문가
 - 2.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- 3.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
 - 4. 그 밖의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장 또는 임직원

이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

- 제4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- ②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제5조(위촉해제)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.
 - 1.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
 - 2.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(6개월 이상)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 - 3.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
 - 4.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
- 제6조(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.
 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7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 -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 -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다.
- 제8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 - 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 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 - 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 - 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 - ②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-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

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- 제9조(의견의 청취)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제10조(간사 등) ① 위원회의 안건 작성,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.
 - ② 간사는 위원회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, 서기는 수질담당 직원으로 한다.
- 제11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, 시료 채취, 위원회관련활동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「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12조(통보) 위원장은 회의 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방안 등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운영규정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〈2020·5·8 조례 제1601호 전부개정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24·7·1 조례 제2117호,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26 까지 생략
 - ② 「이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」제3조제3항 중 "상하수도사업소장"을 "환경수자원국장"으로 한다.
 - ② 생략